

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 []지정
[]지정사항변경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	처리기간	25일
신청인	법인 또는 단체명			
	대표자 성명		생년월일	
	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신청내역	교육기관의 명칭			
	교육기관의 소재지 (전화번호 :)			
	교육수수료 승인신청액 (1인 기준)			
	변경사항 (※변경신청 시에만 기재)	변경 전		
		변경 후		

「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환경측정분석사교육기관([]지정, []지정사항변경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

구비서류	1. 교육기관 운영계획서 1부 2.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1부 3. 교육과정 편성 및 교수요원 확보현황 또는 계획서 1부 4. 강의실·실습시설 및 설비현황 또는 계획서 1부 ※ 지정사항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합니다.	수수료 없 음
------	---	------------

유의사항

교육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수수료를 조작하는 등 교육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
처리절차

